



제400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780호)
-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940호)
-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618호)

2022.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규찬

목 차

I . 개 요	1
【임호선의원안】	1
【유경준의원안】	3
【강병원의원안】	4
II . 검토의견	5
1. 등록의무자의 비위에 대한 경찰 조사 요청 권한 신설 (임호선의원안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조의2제6항)	5
2.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 추가 (유경준의원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6조의4제2호)	11
3.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의 재임명 제한 (강병원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16

I. 개 요

【임호선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2. 16.

다. 회부연월일 : 2022. 2.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재산 허위등록 혐의 또는 재물·재산상 이익 부정취득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토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조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경찰은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서 재산등록의무자의 비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도 비위 조사를 예외적 수사주체만 가능토록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검사가 조사의뢰를 받더라도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재차 인계해야 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안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조의2제6항).

【유경준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유경준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3. 23.

다. 회부연월일 : 2022. 3.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 항목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6조의4제2호).

【강병원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병원의원 등 25인

나. 발의연월일 : 2022. 5. 16.

다. 회부연월일 : 2022. 5.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임.

이처럼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의뢰인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국제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등록의무자의 비위에 대한 경찰 조사 요청 권한 신설

(임호선의원안 제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조의2제6항)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⑥ (생략)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u>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u>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 ----- ----- ----- ----- <u>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⑧ <u>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u> 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u>검사(檢事) 또는 군검사</u> 에게 조사	⑧ <u>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u> ----- ----- ----- <u>검사(檢事), 군검</u>

현행	개정안
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u>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⑩ ~ ⑬ (생략)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 ⑤ (생략)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u>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u>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	<u>사 또는 사법경찰관</u>----- ----- -----. ⑨ -----<u>검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 ----- -----. -----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u>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u>-----

현행	개정안
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 ----- ----- ----- ----- --.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을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를 의뢰받은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¹⁾.

1)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2022. 1. 1. 시행)」 및 「검찰청법(2022. 9. 10. 시행)」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한정된 반면 경찰은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서 수사 개시에 제한이 없게 되었음.

[형사소송법: 검·경 협력관계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개 정 전	현 행
<u><신 설></u>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하 생략)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u>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u>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u> ② (이하 생략)

[검찰청법: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개 정 전	현 행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검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u>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u> <u>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u>
개 정 전	현 행
	<u>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u> <u>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u>

이에 개정안은 조사의뢰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고, 조사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된 수사체계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의뢰 및
타법 위반 통보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
임.

2.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 추가

(유경준의원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6조의4제2호)

개정안은 현행법 상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	2.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 -----.

현행	개정안
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 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주식·채권, 500만원
이상의 금 등으로 규정²⁾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등록재산의 대상에 비트코인³⁾·이더리움⁴⁾ 등 가상자산
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3) 2009년 1월 3일 최초 발행된 암호화폐로, 가장 거래규모가 큼.

4) 2015년 7월 Vitalik Buterin이 개발한 암호화폐임.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등 다양한 용어⁵⁾로 불리우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있고⁶⁾,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에서 가상자산⁷⁾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의

5) 암호자산은 블록체인(Block-chain, 분산원장)과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자산을 뜻하며, 가상자산은 실물의 발행 없이 가상으로 존재하는 자산을 뜻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은 암호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을 뜻함(입법조사처,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38호, 2020.4.29).

6)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인 “OOOOOOO.com”(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유형에 포함되어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파악 등을 통한 정책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으로의 재산 은닉⁸⁾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있음.

다만, 현행법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 자산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대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상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자산의 증감여부의 파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유사 입법례⁹⁾를 참조하여 해당 조항¹⁰⁾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탈세자 2천4백명 강제징수, KBS뉴스, 2021.3.15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1호 외의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10)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자산)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자산처럼 가상자산도 등록기준 하한금액 설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신고내역 확인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¹¹⁾’를 현행법상 금융정보 회신기관(제6조의5¹²⁾)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 11)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이하 생략)
- 12)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무원의 재임명 제한

(강병원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은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에 임명을 제한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퇴직공직자의 공무원 재임명 제한) 정무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국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퇴직공직자¹³⁾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¹⁴⁾을 두고 있으나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개정안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법무법인등¹⁵⁾을

13)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4)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5)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생략

(1. ~ 2. 생략)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직 공무원에 재임용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서 의뢰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는 점, 해당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사적 이해관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법률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법률 체계의 측면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직 공직자 및 퇴직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공무원 임용 및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법」에 개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⁶⁾.

둘째,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형법 등에 따라 일정 형량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 중 파면 및 해임 처분

16)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제4장 임용과시험에서 임용의 원칙(제26조), 차별금지(제26조의6), 신규채용(제28조),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제31조의2), 결격사유(제33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도 제4장 임용과시험에서 임용의 기준(제25조), 차별금지(제25조의6), 신규임용(제27조), 결격사유(제31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¹⁷⁾하고 있는데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 취업 후 퇴직한 것이 이와 같은 결격사유와 유사한 수준의 사유인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무담임권은 헌법상 권리¹⁸⁾로 이를 제한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의 경우 임용을 제한하는 직위를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국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별다른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더라

1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제31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18)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도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임용을 제한하는 직위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¹⁹⁾.

한편,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과거 특정 기관에 취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1

19) 예를 들어 “그 밖에 정무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등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임.